

# 04

## 보건·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 1 보건복지부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시행일 : 2019년 1월

Before

현재 1세 미만 아동 종별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

종별	개인 부담	사용 기간	출산 후
상급 종합병원	42%	60일까지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종합병원	35%	지원 금액	임신·출산 진료비
병원	28%	사용 범위	
의원	21%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50만원 (90만원), 사용기간 출산 후 60일까지, 사용범위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정

After

2019년 1월부터 1세 미만 아동 종별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이 5~20%로 완화

종별	개인 부담	사용 기간	출산 후
상급 종합병원	20%	60일까지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종합병원	15%	지원 금액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병원	10%	사용 범위	
의원	5%		



2019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10만원이상, 사용기간도 출산(생) 후 1년까지 확대, 사용범위도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사용 가능

## 2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시행일 : 2019년 3월(주간활동서비스)  
2019년 7월(방과후돌봄서비스)

Before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After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2,500명('19년)
서비스 내용	이용권(바우처) 월 88시간 (단가 12,960원)
방과후돌봄서비스	
대상자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4,000명('19년)
서비스 내용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단가 12,960원)

### 3 보건복지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시행일 : 2019년 1월

Before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18. 10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  
(\*17. 11월)

< '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 약452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 약 135.6천원

After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되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됩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사실보호  
종로 아동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  
(\*생계급여만)

< '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 약461.4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약 : 138.4천원

### 4 보건복지부

####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대부분의 충치  
치료에 사용되에도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수준이 큰 편이었습니다.



가격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10여만원

After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부담은  
치과의원 기준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 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시행일 : 2019년 4월(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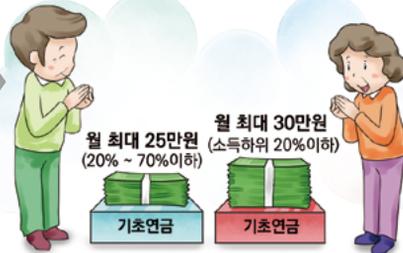
Before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fter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이하의 어르신(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6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일자리 안정자금」 '18년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습니다.



After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5인 미만은 2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 7 고용노동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시행일 : 2019년 3월 접수 시작

Before

신설

After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19년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득기준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4원 이하  
지원대상 :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8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약 안전관리강화로 우리 먹거리가 더 안전해집니다.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는 농약도 국제기준이나 유사농산물의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잔류하는 것을 허용해왔습니다.



After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PLS가 시행되며, 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기준 (0.01 mg/kg)으로 더 엄격히 관리됩니다.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선수가 없도록 장학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44-203-3134)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초·중·고 학생 선수(장애인 포함)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3년 이상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17개 시·도교육청 협조를 통해 3년 이상 선수 활동 경력과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급 자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도자료 배포, 누리집 등재 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 승인('19.2월) 후에 보도자료 등 배포 예정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신규)

- 추진배경**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초·중·고 학생 선수(장애인 포함)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 지원요건** 3년이상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하는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
- 시행일** 2019년 3월부터 장학금 지급

##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044-202-3242)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보수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에 따라 돌봄종사자 약 13만 명의 임금이 올라갑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돌봄서비스 서비스단가 인상 현황(단위 : 원,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2018	10,760(16.5%)	10,760(9.8%)	12,750(14.6%)	11,800(15.7%)
2019	12,960(20.4%)	12,960(20.4%)	14,000(9.8%)	14,000(18.6%)

▣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5만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가, 교육, 경·조사 등 휴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8년부터 사회복지직 대체인력 23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조리원 대체인력 35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18년) 사회복지직 233명 → ('19년) 사회복지직 233명 + 조리원 35명

###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전 사회적 근로여건 개선
- 주요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임금 인상, 어린이집 보조교사 1.5만명 추가 확충,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확대
- 시행일 2019년 1월~(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은 2019년 7월~)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2/ 2731)

모성 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중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됩니다.

〈1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 비율(%)〉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현행	42	35	28	21
개정	20	15	10	5

-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의 금액(10만원 인상), 대상,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을 확대하여 혜택을 넓혀줍니다.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내에서 출산(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발표 예정

### 1세 미만 아동 및 임·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

- **추진배경**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① 1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지원 확대(21~42%→5~20%)
  - ②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 10만원 인상, 사용기간 및 대상 확대
    - \* 단태아 50→60만원, 다태아 90→100만원,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1년까지,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 **시행일** 2019년 1월

## 보건복지부

# 하복부(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18.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19년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신낭종, 요로결석, 맹장염, 장충첩증, 치질 등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19년에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비뇨기나 하복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 **시행일** 2019년 상반기

##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18.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19년에는 두부·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 시행일 2019년 상반기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 044-202-3692)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됩니다.

-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 ▣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 **추진배경** 지역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대상 선도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선도사업 지자체 : 8개 기초지자체(사업예산은 총 6,393백만원)  
\* 노인 4개 시군구,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 실시
  -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대상별 케어모델 운영
    - 돌봄 관련 상담·안내를 위한 케어상담창구 운영, 집수리(낙상방지), 방문의료, 방문 건강관리, 요양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선도사업 공모·선정**
  - 지자체 및 관계기관 대상 정책 설명(‘19.1월)
  - 선도사업 공모(‘19.1월) → 심사·선정(‘19.3월 초)
  - 선정 지자체 추진계획 전문가 컨설팅(‘19.3-4월)
- **시행일** 2019년 6월

##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044-202-3535)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 등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확충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19년부터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로써, 치매안심병동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치매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므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치매안심병원 지정

- **추진배경**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환자를 위한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여 치매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경감
- **주요내용**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6~7 및 별표2의2 신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일정한 시설·장비·인력기준을 갖춘 병원
-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

## 보건복지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4, 3228)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 지금까지는 예산상 제약으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에 머물렀으나,

  - 2019년 1월부터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18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80%(월 363만원) → 100%(월 452만원)
  - \*\* (지원 대상) 8만 명 → 11.7만 명(3.7만 명 증가)
  
- ▣ 앞으로도, 저 출산 대책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을 위하여 저출산 대책의 핵심과제로 선정, 검토
- **주요내용**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

  - \* ('18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80%(월 363만원) → 100%(월 452만원)
- **시행일** 2019년 1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44-202-2815)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등 지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 만성질환자 약 1,397만명(총인구의 27%), 전체진료비(54조원)의 35%인 18.7조원(고혈압·당뇨 4.3조원)
- 앞으로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관찰·관리 및 교육·상담,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 특히, 기존 만성질환관련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여 경증만성질환자가 동네병원 중심으로 관리됨으로서 만성질환 적정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기대됩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시행

- 추진배경 포괄적·통합적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관리
- 주요내용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 관찰·관리, 교육·상담, 평가 등 제공
- 시행일 2019년 1월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 검역지원과 (☎ 043-719-7140)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60개국에서 67개국으로 변경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오염인근지역이 6개국으로 확대·선정하여(5개국 신규 선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 검역감염병(9종\*)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6종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변경(지정·해제) 하였습니다.

\* 콜레라,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감염병증후군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 |   |                        |
|---|------------------------|
| ① (콜레라) 15개국→18개국                       | ④ (폴리오) 7개국→9개국        |
| ②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국 11개 성·시→9개 성·시 | ⑤ (페스트) 1개국→1개국(변동없음)  |
| ③ (중동호흡기증후군) 5개국→10개국                   | ⑥ (황열) 42개국→42개국(변동없음) |

- 특히, 메르스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중동지역 일부 국가(5개국)를 메르스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여 향후에도 입국자 검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12년 이후 메르스 발생지역, 지정학적 근접 위험국, 선진국의 중동지역 관리 범위를 고려하여 선정(입국자 검역조치는 오염지역과 동일)

**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해외질병>검역감염병 오염지역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 **추진배경** 해외감염병 발생 변화에 따른 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현행화
- **주요내용**
  - ① 오염지역 변경(60개국→67개국\*) \* 감염병별 중복 국가 제외
    - 지정 : (콜레라) 니제르, 카메룬, 짐바브웨, 알제리 (폴리오)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 해제 : (콜레라) 수단
    - 변경 : (AI) 중국 11개 성·시 → 9개 성·시\*
  - ② 메르스 오염인근지역 신규 지정 : 바레인, 요르단, 이란, 레바논, 예멘
    - ※ 감염병별 중복 국가 제외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9)

'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합니다.
  -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계획

- 추진배경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및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 주요내용
  - ①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 ② 거동 불편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구축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52)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도입할 예정입니다.

-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면 마땅한 갈 곳이 없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88시간(하루4시간)의 주간활동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22년까지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7천명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 (방과후돌봄서비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4,000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하루 2시간)의 방과후돌봄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22년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22천까지 방과후돌봄을 단계적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자: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1,500명('19년)
  - 서비스내용: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88시간(단가 12,960원)
- ② 방과후돌봄서비스
  - 대상자: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4,000명('19년)
  - 서비스내용: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단가 12,960원)
- 시행일     2019년 3월(주간활동서비스), 2019년 7월(방과후돌봄서비스)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8)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8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서울과 경남(양산시) 2곳에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 서울한양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16.9월~)

- 2019년에는 6곳을 신규 지정하여 전국 권역별\*로 포함 8곳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권역별로 거점병원이 지정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치료 및 개입과 더불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행동발달증진 센터 권역별 확대

• 추진배경 발달장애인 전문적 치료지원 및 의료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 주요기능

-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 발달장애인 행동치료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가족 및 종사자에 대한 행동문제 증재 교육, 행동치료지원 전문가 양성 및 전문 연구 등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 문제행동 관련 발달장애인 다빈도 질환, 문제행동의 원인이나 개입과정에서 발견된 질환의 치료지원 등

• 지원확대 : 2018년 (2개소) → 2019년 下 (8개소)

• 시행일 2019년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47)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예정입니다.

- ▣ 그간 사회서비스는 민간중심으로 제공되었으며,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현저히 미흡하여

  -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향상 및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 종사자들의 근로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 '19년에는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서비스 품질향상, 시설·지역 간 격차 해소,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 기대됩니다.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 주요내용

시·도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시설 직접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요양 등 각종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시설 안전점검 등 민간제공기관 지원
- 시행일

2019년 상반기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2)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개선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 됩니다.
  - 또한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됩니다.
  - '19년 기준 중위소득(452→461.4만원) 및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4인가구 135.6→138.4만원)에 따른 생계급여액이 확대 지급되고
  -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 주거급여도 '19년 기준 임대료 인상(5.0~9.4%)으로 급여가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확대(기준 중위 소득 43 → 44%) 됩니다.
  - 교육급여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 추진배경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주요내용 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3단계 시행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보장수준 강화
- 시행일 2019년 1월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24, 3821)

'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별도 서비스가 없고, 보호종료 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경제·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19년부터는 만18세~24세인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보호종료아동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880명)를 제공하여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경계선 지능아동의 자립역량을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지원 강화

- **추진배경**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및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 지원
- **주요내용**
  - 보호종료 2년 내인 만 18~24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시범사업)
  -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240호) 통합 제공 (시범사업)
  -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880명) 제공
- **시행일** 2019년 4월(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019년 5월(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2019년 6월(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044-202-2685)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대부분의 충치 치료에 사용됨에도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 수준이 큰 편이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 원 기준 치아당 8만 원~9만 원 수준입니다.
-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간은 비급여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용(약 8만 5,000원)의 일부(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한방推拿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추진배경 어린이 충치 치료 부담 완화
- 주요내용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자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자활장려금 지급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3)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여 차감함에 따라 근로유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 ▣ '19년부터는 자활근로(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9년 자활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약 19천명에 최대 38.5만원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 자활장려금 개요

- **추진배경** 자활장려금 지급을 통해 자활참여 생계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소득증가 및 탈수급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전월 기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지원금액 : '19년 자활참여 생계수급자 약 19천명 대상, 월평균 21.3만원 지급 예상(최대 38.5만원)
- **시행일** 2019년 1월

##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4)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생활 SOC 예산 39억을 지원합니다.

-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에 개소당 평균 2,300백만원 지원

- 그간, 지역자활센터는 노후화된 시설 환경에 대한 개선 욕구가 컸으나 국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19년에는 사업단 리모델링, 노후 장비 교체 등 환경개선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히, 시공 단계에서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 **추진배경**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자활센터에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업무환경 개선 및 양질의 자활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①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자활센터 발굴 및 신청 접수
  - ② 지자체는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자활센터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등 반영
  - ③ 시공단계에서는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실시
- **시행일** 2019년 1월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2)

2019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됩니다.

-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가는 등,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 또한,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한 후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19년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안,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17.12.29.)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및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지정

- **추진배경**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 **주요내용**
  - ①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②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 금연구역으로 지정
    - 1단계 : ('18.7.1.시행)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단계 : ('19.1.1.시행)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 **시행일** 2018년 12월 31일(어린이집·유치원 금연구역), 2019년 1월 1일(흡연카페)

## “청년이 청년을 돕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4, 3228)

’19년부터 17개 시·도별로 한 곳씩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하여 청년층의 건강 개선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가 없었으나, ’19년부터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대학,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등을 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단에서는 청년을 채용·교육 후,

■ ’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층의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게 됩니다.

■ ’19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여 ’20년에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시범 운영 실시

- **추진배경** 청년층의 건강 개선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개 시·도별 사업단에서 청년 119명(1개 사업단 당 7명씩 채용, 17개 시·도에 119명 채용)을 채용·교육 후, 청년대상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정부에서는 청년 임금과 사업단 운영비를 지원
    - \* 서비스 제공 청년: 19~34세의 저소득층, 관련분야 전공자 등 우대 채용
    - \*\* 서비스 이용 청년: 15~39세의 청년층(소득기준 없음, 무료제공)
- **시행일** 2019년 3월~12월
  - \* 사업계획 공고(’18.12.17.~’19.1.11.) → 시·도별 청년사업단 선정(’19.1.)
  - 인력채용 및 교육(~’19.2.) → 사업시행(’19.3.~12.)

## 보건복지부

#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8)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 및 20세, 30세 때 우울증 검사를 실시합니다.

▣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여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

-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19년부터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20~30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 추진배경 20~30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 주요내용
  - ①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을 포함하여 국가건강검진 대상 적용
    -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19년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 → '19년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 ② 우울증검사 대상 : 40세·50세·60세·70세 → 20세·30세·40세·50세·60세·70세
- 시행일 2019년 1월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2)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8년 9월부터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0만9,960원 → 25만원으로 인상
  - 2019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배포 예정(12월 말)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추진배경**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①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25만원→30만원)
  - ②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 확대,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시행일**
  - ① (소득하위 20%) 2019년 4월(잠정)
  - ② (소득하위 40%) 2020년
  - ③ (소득하위 70%) 2021년

##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6)

노인일 자리를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노인일 자리는 활동역량에 비해 활동시간이 적어 참여자 활동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활동 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하고, 활동 수당도 6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하였습니다.
- 아울러, 어르신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노인일자리 확대

- 추진배경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
- 주요내용
  - ① 노인일자리 확대(51만개 → 61만개)
  - ②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신설 : 월 65만원/월 60시간 기준  
\*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 보조 등
- 시행일 2019년 1월

##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과 (☎ 043-719-8775)

'18년 9월 희귀질환 지정목록이 공고되었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 또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 예정입니다.

\*\* '19년 추가 검토에 따라 질환 개수 변동 가능

'19년에는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지정·운영하여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관리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새소식)의료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희귀질환 지원확대 추진

### 희귀질환자 지원확대

- 추진배경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역할 확대
- 주요내용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652개→927개)  
②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사업 대상 확대(극희귀질환 51개→89개)  
③ 권역별 거점센터 확대 지정 및 운영 (중앙 1개 센터, 지역 10개 센터)
- 시행일 2019년 1월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970)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 (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 됩니다.

종전에는 ①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②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최저임금법 개정('18.6.12)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정 최저  
임금법 주요내용)**

- **추진배경** 고임금 근로자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불합리 해소 및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 계기 마련
- **주요내용**
  - ① 개정 최저임금법( 18.6.12)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을 규정 →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 다만,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상여금), 7%(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②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 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 044-202-778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9년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 ▣ '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 '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18년과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지원(월 15만원)합니다.
- \* (5인 미만) 월 15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13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 지원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19년에도 안정자금 지원 지속
  -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더 크나 지불여력은 낮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추가지원 실시
- **주요내용**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 \* (5인 미만) 월 15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13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67)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 '19.1.1.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신규고용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할 것(대규모 기업)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 가능하며, 승인절차가 폐지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일자리창출)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 **추진배경** 근로시간단축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자원을 위해 지원수준 인상 등 실시
- **주요내용**
  - ① (지원금 인상) 기업규모 관계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 월 60만원 지원  
\* 우선지원기업·중견기업 대상, 간접노무비 추가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10만원
  - ② (지원요건 완화) 사전승인절차 폐지 및 기업규모 관계없이 신규고용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110%이상이면 지원가능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부터 적용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044-202-7493, 7443)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19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만 18~34세 청년 중 ①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②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졸업·종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종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② (소득기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4원 이하
-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제외).

**참고** '19.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 시작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 **추진배경**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 (지원내용) 월 50만원 x 6개월(클린카드로 지원)
- **시행일** 2019년 3월 접수 시작

##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건설기계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레미콘(믹서트럭콘크리트)기사에 한하여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는데,
  - '19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1인 자영업자는 현재 8개 업종\*에 한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 ③ 건설기계사업 ④ 퀵서비스업 ⑤ 예술인 ⑥ 대리운전업 ⑦ 금속 등 제조업 ⑧ 자동차정비업
  - '19년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일선수협 투명경영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① 건설기계업종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1개→27개)  
②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항공장학재단(“하늘드림재단”) 설립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044-201-4248, 4254)

저소득층 등의 양질의 일자리(조종사) 등 희망사다리 확대를 위해 '18년 말까지 하늘드림 재단을 설립하고 '19년부터 조종사를 희망하는 先선발 後교육으로 선발된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조종사 희망자를 항공사가 선발한 후 훈련기관에 위탁, 훈련완료 후 채용

- ▣ 지금까지는 능력과 열정이 있어도 높은 비행훈련 비용으로 인해 조종사를 꿈꾸는 저소득층 등 청년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 '19년부터는 하늘드림재단을 통해 先선발 後교육으로 선발된 훈련생들 중 중위소득 기준 150% 이내를 대상으로 훈련비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 하늘드림재단 설립

- 추진배경 저소득층 및 서민층에 대한 희망사다리 확대
- 주요내용
  - ① (재원) 양 공사에서 60억(각 30억)을 출연하고 점차 확대
  - ② (대출금액) 약 1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금리 약 3% 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 ③ (지원대상) 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선발 인원 중 중위소득 기준 150% 이내 대상자('19년도 목표 약 30명, 20억)
- 시행일 2019년 1월 2일

##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044-201-3826)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간에는 대중교통은 지자체 업무로 간주, 정부의 지원이 미약했으나, 2019년부터는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합니다.
- 각 시지역 당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 농림부는 군 지역에 동일한 사업 별도 추진

###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도시형 교통 모델 추진

- 추진배경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 주요내용 ① 공공형 버스(소형버스 등) 기초 지자체당 3억원 (지자체 매칭 5:5)  
②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등) 기초 지자체당 5천만원 (지자체 매칭 5:5)
- 시행일 2019년 상반기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043-719-2268)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 전국적으로 노인 등을 대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는 10,191개 급식시설 중 약 73%(7,413곳)가 50인 미만 시설로 영양사가 없이 급식이 제공됨에 따라 위생 및 영양관리가 취약하여,

  - 전국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센터에 소속된 영양사 등 급식관리 전문인력이 급식소를 순회 방문하여 위생·영양관리를 지도하고,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 또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급식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모든 어르신 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급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 **추진배경**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요양시설의 불량급식이 보도되는 등 국민 불안이 높아 노인 복지시설 급식 영양·안전관리 지원 필요
- **대상**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 대상 급식소(280개소)
- **수행** 6개 시·도 6개소
- **운영**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여 그간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성과를 활용하는 등 운영 효율성 제고
- **주요 사업**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노인·조리원·요양보호사 등 대상 맞춤형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행일** 2019년 7월

## 농약 안전관리강화로 우리 먹거리가 더 안전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 043-719-3865)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가 더욱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19.1.1.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행됩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PLS가 시행되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잔류할 경우 불검출 수준(0.01 mg/kg)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PLS의 도입으로 국내외 구분 없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킨 안전한 농산물만이 우리나라민에게 제공됩니다.

### 〈PLS 이후 제도 변화〉

기준 여부	현재	향후	비고
기준 설정 농약	기준에 따라 적용	좌동	-
기준 미설정 농약	① 당해 농산물의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적용	일률기준 적용 (0.01 mg/kg 이하)	기준이 없음에도 ①, ②, ③ 순차 허용했던 농약 오남용 관리 한계점 개선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일부 시행

- 추진배경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및 농약 오·남용 방지
- 주요내용 농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 검출 시 일률기준 (0.01 mg/kg 이하)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18.2.22.)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 043-719-6210)

수입 위해식품을 수출국 현지부터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수입검사 다수 부적합 및 사회적 이슈 등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우려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관리합니다.

  - 2019년에는 중국산 김치 및 베트남산 과채·채소류음료 등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우선 실시하여 위해우려 품목은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 관리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냉동식용어류머리 등 특별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모든 수입국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현지실사를 기피·방해하거나 현지실사 계획에 대해 계속 무응답하는 등 의도적으로 현지실사를 기피하는 업소는 수입중단 등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 계획

- **추진배경**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로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
- **주요내용**

  - ① 수입검사 부적합 및 언론 이슈 등 위해우려가 높은 국가의 품목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 ② 냉동식용어류머리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모든 수입국에 대한 현지실사
  - ③ 현지실사를 의도적으로 기피, 방해하는 업소에 대한 제재조치(수입중단 등)
- **시행일** 2019년 3월(잠정)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044-719-2004)

식품판매업소에 개별 설치되었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 12월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설치매장에 대한 운용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 화수 대상 위해식품 정보를 유통매장의 POS 단말기로 전송하여, 위해식품의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 모든 매장의 시스템이 항상 정상 작동 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서비스(방문 및 원격)를 제공하여, 위해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 위해식품판매차단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중소유통매장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관리 필요
- 주요내용    ① 위해식품판매차단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 1단계 : ('18) 현황판 등 실시간 관제시스템 구축
  - 2단계 : ('19) 리포트, 통계, 보안강화 등 추가기능 개발②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위해정보 수신 모니터링, 상담 및 현장기술지원
- 시행일    2018년 12월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저출력심장충격기(AED) 및 모유착유기의 성능 등 실태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043-719-3815)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사용시설에 설치된 공동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 및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철도역사 등에 설치된 저출력심장충격기\*(AED)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나, 경로당 등 의무적용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제품은 안전사각지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저출력심장충격기(3등급) : 전기 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실 세동을 제거하는 기구

- 설치 의무 기관외의 장소\*에 설치된 제품에 대해 작동성능, 배터리 방전 및 패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시설, 청소년수련관 등(출처 :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 또한, 모유착유기의 경우 출산 직후의 산모가 사용하고, 신생아가 섭취하는 모유를 취급하는 제품으로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 산후조리원, 직장내보육시설에 비치되어 공동사용하는 모유착유기에 대해 위생관리 및 소독여부 실태 조사 및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모유착유기 설치 현황 : 전국 산후조리원 624개소(11,865대) 및 전국 직장내 보육시설 562개소(562대)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지원과)

### 공동사용 의료기기 실태점검 계획

- **추진배경** 안전사각지대에 설치되어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 및 사용실태 점검 필요
- **주요내용** 자동제세동기 및 모유착유기에 대한 성능 및 관리 실태 등 점검
- **시행일** 2019년 상반기(저출력심장충격기), 하반기(모유착유기)